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10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이학영 · 최혁진 · 박정현
이용우 · 강득구 · 김현정
안호영 · 강준현 · 한민수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법원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1조의6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계약을 이행할 때에 제31조의6의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단순노무용역계약의 조건부 입찰참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
항에 따른 확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순노무용역계약의 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입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9. (생략) ② ~ ⑦ (생략) <u><신설></u>	<u>이행하지 아니한 자</u> 9.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6(단순노무용역계약의</u> <u>조건부 입찰참가) ① 각 중앙</u> <u>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u> <u>원 계약상대자가 청소·경비·</u> <u>시설물관리 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u> <u>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u> <u>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u> <u>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u> <u>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u> <u>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u> <u>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u> <u>가를 허용하여야 한다.</u> <u>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u> <u>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u> <u>이 제1항에 따른 확약을 이행</u> <u>하지 아니한 용역계약의 계약</u> <u>상대자에 대하여 낙찰을 취소</u> <u>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u> <u>야 한다.</u>
---	---